



즉시 배포용: 2017 년 8 월 15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증오범죄법(HATE CRIME LAW)에 “샬로츠빌 조항(Charlottesville Provisions)” 추가**

*뉴욕주의 증오범죄법(Hate Crimes Law)에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 및 보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폭동을 범죄로 분류하여 추가하는 새로운 법안*

*또한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보호 대상을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로 확대하는 입법 요청*

지난 주말 샬로츠빌에서 발생한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의 여파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증오범죄법(hate crimes law)에 따라 지정된 범죄의 목록에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 및 보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폭동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샬로츠빌 조항(Charlottesville provisions)이라고 알려진 이 법안의 변경 조항은 평화 시위가 허용되는 동안 뉴욕은 우리 지역사회 내의 보호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지지나 선동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샬로츠빌에서 일어난 추악한 사건은 절대로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욕에서 단합하여 모든 형태의 증오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고 폭력과 차별은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은 하나의 공동체이며 하나의 가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의 안전과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확대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현행 법 하에서는 사립학교 학생들만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립학교 학생들은 차별 대우를 받더라도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샬로츠빌 조항(Charlottesville Provisions)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성별, 종교, 종교적 관습, 연령, 장애 또는 성적 성향에 관한 인식이나 믿음 때문에 희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시된 일련의 범죄행위 중 하나를 범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해당 유형의 인식이나 믿음의 결과로서 범해지는 경우, 해당 범죄자는 증오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증오 범죄는 개인, 개인들의 집단, 또는 공공 재산이나 민간 재산을 상대로 범해질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증오범죄법(Hate Crimes Law)은 증오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특정 범죄 목록에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 및 보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폭동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될 것입니다. 폭동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E 급 중범죄에서 D 급 중범죄로 강화될 것이며 폭동을 선동한 행위는 A 급 경범죄에서 E 급 중범죄로 강화될 것입니다.

##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적용 대상 확대

증오범죄법(Hate Crimes statute)을 개정하는 일 외에도, 주지사는 또한 모든 공립학교 학생 및 기관을 차별에서 보호하기 위해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개정하는 입법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교육 법인 또는 조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2012 년 뉴욕주 상소법원(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의 판결에 따라, 주정부 인권국(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은 공립학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나 희롱 또는 기타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 건을 수사할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인권국이 30 년 가까이 공립학교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결국 인권국은 당시 공립학교를 상대로 접수된 70 여 건의 고발을 기각해야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어제, 검사들이 지역사회 센터에 대해 폭탄 위협을 가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허용하여 증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많은 수단을 검사들에게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16 년 11 월에 Cuomo 주지사는 증오 범죄 신고 사건을 전담할 주립 경찰(State Police) 소속 수사대 창설과 주정부 인권법(human rights law) 보호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는 입법,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비상 변호인 선임 기금(emergency legal defense fund) 설치 등 뉴욕주에서 민권을 보호하고 증오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애비시니언 뱍티스트 처치(Abyssinian Baptist Church)에서 연설 도중 [발표했습니다.](#) 주립 경찰(State Police)은 증오 범죄 전담 수사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uomo 주지사는 미국 최초로 이민자에 대한 공공-민간 법적 변호 프로그램(public-private immigrant legal defense initiative)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를 출범시켰지만 뉴욕주 의회는 아직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시민권 보호와 중요 범죄 방지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신 뉴욕 주민들께서는 인권국(DHR)의 [무료 직통전화 \(888\) 392-3644](tel:8883923644) 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범죄를 신고하고자 하시거나 본인의 안전을 우려하실 만한 상황이 있다면 즉시 911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뉴욕주 피해자 지원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OVS는 223개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중요 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기 중재 및 상담 등의 직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다른 개인적 구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 보상과 기타 지원을 범죄 피해자가 관계 기관에 신청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OVS 지원을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은 온라인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https://ovs.ny.gov/locate-program>.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ovs.ny.gov](http://www.ovs.ny.gov) 을 방문하십시오.

뉴욕주는 모든 시민들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법 (Human Rights Law)을 제정한 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인권국은 고용, 주택, 공공시설, 신용 및 기타 영역에서 연령,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성, 혼인 여부, 장애, 군필 여부 및 기타 특정 분류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인권법과 인권국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웹사이트([www.dhr.ny.gov](http://www.dhr.ny.gov))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